

식민지 조선에서의 도평의회의 정치적 전개*

-김기정 징토(懲討) 시민대회를 중심으로-

金東明**

(e-mail : kindomy@kookmin.ac.kr)

目次

I. 서론	IV. 시민들의 항의 시위와 실행 언도
II. 김기정 언행의 문제화	V. 결론
III. 김기정 징토 시민대회와 도당국의 탄압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1927년 경남 통영에서 일어난 「김기정(金淇正) 징토(懲討) 시민대회」¹⁾를 중심으로 일본제국주의 지배하 식민지 조선에서 전개된 도평의회의 역사적 성격의 일단을 밝히는 데에 있다. 김기정 징토 시민대회는 당시 경상남도 도평의회원이었던 김기정이 도평의회 석상 등에서 행한 발언과 행동에 대해 통영시민들이 조선민족을 무시하는 행위였다며 벌인 항의 시위이다.

잘 알려진 대로, 1910년 조선을 강제 병합한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에 대한 식

* 이 연구는 2011년도 국민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 본고에서 다루는 시민대회는 일본제국주의 지배하 식민지 조선에서 전개된 「주민대회」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주민대회는 192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조선 전 지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는데, 지역과 주민의 이해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 반응과 활동이 집약된 것이다. 식민지 시기 주민대회에 대해서는, 한상규, 「식민지시기 지역 주민대회에 대한 검토」 『2011년 일한민중사국제학술교류』(역사문제연구소·아시아민중사연구회 심포지엄자료집), 2011년 1월, 31-43쪽을 참조바람.

민지 지배를 지속하기 위해 조선인의 정치참여를 완전히 배제하고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물리적 중심의 일방적 지배를 강행했다. 그러나 1919년 3월 조선인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 그 자체를 부정하고 조선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3·1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일본제국주의는 소위 「문화정치」로 전환했다. 억압일변도의 일방적 정책 실시만으로는 더 이상 조선을 식민지 지배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일본제국주의는 일정한 제한 하에 조선인의 정치활동과 참여를 허용하여 조선인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구체적 정책을 제시했다.

본고에서 다루는 도평의회는 일본제국주의가 지방레벨에서 소수의 조선인에게 정치참여를 허용하여 조선인과 약간의 지방권력을 분점하고 조선인의 중앙레벨의 정치참여를 최소화하여 중앙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3·1운동 직후에 설치한 지방행정 자문기관 중 하나이다. 1920년 7월, 총독부는 도, 부, 면에 지방행정 자문기관을 설치했는데 도평의회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도평의회는 도지방비령에 의해 각 도에 설치되었다. 도평의회는 주된 권한은 도지방비 중에서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지방세·사용료·수속료·부역현품의 부과징수, 기채(起債) 등에 관해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는 것이다. 도평의회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명예직이며 도지사가 모두 임명했는데, 정원의 3분의 2는 부·면협의회의원이 선거한 후보로부터(민선), 나머지 3분의 1은 「학식과 명예」가 있는 자로서 1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25세 이상의 남자 중에서(관선) 각각 임명했다. 도지사는 의장을 맡아 회의를 총리하고 회의진행 중 도평의회원의 발언을 금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회의장에서 의원을 퇴장시킬 수 있는 등 막대한 권한을 가졌다. 그리고 도평의회는 정원은 도의 인구에 따라 18명에서 37명까지 다양했다²⁾.

한편, 도평의회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도평의회가 의결권한이 없는 자문기관이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극히 제한되고 의장의 권한이 막강한 점 등을 들어 불완전한 지방자치체로서의 「허울」 적이고 「기만적」인 성격을 강조했다. 그 결과 도평의회는 허구성을 지적하고 관치주의와 중앙집권주의에 의해 지방 지배를 관철하려는 일본제국주의의 의도를 비판하며 조선인 도평의회원의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일방적 협력과 그들의 의회 활동에 대한 비판 여론에 초점을 맞추어 매우 정태적으로 분석해왔다.³⁾ 이는 그 동안 식민지 시기의

2) 「改正地方制度條文」(『朝鮮』, 1921年 9月號 附錄 수록). 식민지 주선에서 전개된 지방 「자치」 제도의 전반에 관해서는, 孫禎睦, 『韓國地方制度·自治史研究(上)』, 一志社, 1992, 김동명, 「일본제국주의와 식민지 조선의 지방 『자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2집 1호, 2000, 48-55쪽, 동선희, 「일제하 조선인 도평의회·도회의원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11-67쪽 등을 참조.

3) 孫禎睦, 앞의 책, 188-197쪽, 姜東鎭,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329-331쪽, 박찬승,

연구가 지배정책사와 민족운동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정치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연구 경향에 기인하는 바 크다.

하지만 실제 식민지 조선에서 전개된 정치과정은 일본제국주의와 조선인 정치운동세력이 각각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점을 안은 채 다양한 방향성을 갖고 상호작용하며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즉, 일본제국주의와 식민지 조선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민족모순이 존재했다. 이 때문에 일본제국주의가 식민지 조선의 정치과정에서 탄압, 동화, 회유 등을 통해서 지배를 지속하기 위한 합의를 조선인 정치세력으로부터 조달하고 그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일본제국주의 지배권력을 상대로 조선인 정치세력이 투쟁과 타협을 반복하면서 운동 세력 간의 대립과 충돌을 극복하고 운동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⁴⁾ 따라서 일본제국주의 지배하 식민지 조선에서 전개된 도평의회의 역사적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실제 전개된 정치과정을 구체적이고 동태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역에서 실제로 전개된 도평의회의 정치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도당국의 지배정책이 순조롭게 실현되고 도평의회원들이 도당국의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협력을 전개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양자가 지역주민들 사이에 두고 대립하거나 갈등하는 측면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 특히 도평의회원들은 조선인 사회로부터의 지지가 없이는 정치적 활동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식민지 지배를 지속하려는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하는 대가로 권력을 분점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였다. 그 때문에 지역주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도당국과 갈등과 협력, 대립과 협조 등을 반복했다. 그들은 조선사회의 지지를 기반으로 지배세력으로부터 더 많은 권력을 분점받기 위해 매개적인 위치에 서있었던 것이다.⁵⁾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고는 1927년 도평의회 등에서 행한 김기

「일제하 ‘지방자치제도’의 실상」 『역사비평』, 통권 15호, 1991 등.

- 4) 이와 같이 식민지 현지에서의 정치과정을 제국주의 지배 분석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중요한 연구 시점을 제시한 사람은 로널드 로빈슨(Robinson, Ronald)이다. (Robinson, Ronald, “Non-European Foundations of European Imperialism: Sketch for a Theory of Collaborations”, R. Owen and B. Sutcliffe, eds., Studies in the Theory of Imperialism. London: Longman, 1972, pp.117-142).
- 5) 이와 관련하여 최근 식민지 시기 지역정치에 관한 연구가 새롭게 진행되면서 지역유지 또는 지역유력자라는 개념으로 지역에서의 정치적 전개가 설명되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지역유지나 지역유력자가 지배 당국과 조선사회를 사이에 두고 한편으로는 일본제국주의의 지배정책에 협력함으로써 그들의 신용을 얻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인의 이해를 대변함으로써 지역민의 신망과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본고도 이들 연구로부터 많은 시사를 받았다. 지수걸, 「일제하 공주지역 유지집단의 도청이전 반대운동(1930.11~1932.10)」, 『역사와 현실』, 제20권, 1996, 동, 「일제하의 지방통치시스템과 군 단위 ‘관료-유치체제」, 『역사와 현실』, 제63호, 2007, 동선회, 앞의 논문, 제3장, 137-197쪽 등.

정의 문제 발언과 행동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위 김기정 징토 시민대회의 일련의 과정을 분석한다. 김기정의 도평의회석상 등에서의 언행 내용이 알려지자 일부 조선인들이 그것을 매족적 언사로 규탄했으며 당국이 이를 탄압하자 조선인들의 반발이 일본제국주의로 향하며 더욱 거세졌다. 이러한 사건 전개는 도평의회원이 지역사회의 지지를 무시하고 도당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협력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줌으로써 종래의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도평의회원의 역사적 성격의 일단을 새롭게 밝히는 단서가 된다. 한편, 본고에서는 조선, 조선인 등 당시의 용어는 기술의 편의를 위해 그대로 사용했으며, 고어 중 표현이 어색한 것은 본래의 의미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대어로 바꾸었다.

2. 김기정 언행의 문제화

김기정은 통영에서 통영면협의회원, 보통학교학무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1924년 경상남도 도평의회회원에 민선으로 당선되었다. 도평의회에 당선된 이후 도평의회 석상 등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 발언과 행동이 이어졌다.

먼저, 1926년 2월 5일 도평의회가 열리자 김기정은 「조선인이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면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밥만 먹고서 부당한 행동이나 하며 사회주의이니 무엇이니 하여 도리어 해독을 끼친다」고 발언했다. 이어 1927년도 도평의회 석상에서 조선인 의원 윤병호(尹炳浩)가 일면일교제를 즉시 실시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김기정은 「조선인은 교육이 하등 필요가 없다. 기미(己未) 소요 이후에 조선인의 교육열이 팽창하는 듯하여 당국에서도 그에 응하여 학교를 많이 세웠으나 지금은 학교는 있어도 배울 사람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조선어 통역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보통학교에 조선인 여교원을 쓰고 조선인을 위하여 고등보통학교를 세우자는 조선인 의원의 의견에 반대하고 마산에 일본인 학교를 세우자는 일본인 의원의 주장에는 찬성하였다.⁶⁾

이와 같이 조선인을 무시하고 조선인의 입장에 선 정책에 반대하며 일본인 본위의 정책에 찬성하는 김기정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같은 조선인 의원인 이곤영(李坤寧), 김치수(金致洙) 등으로부터 「결렬한 논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태도가 바뀌지 않자 이를 알게 된 일반 조선인들이 그의 언행을 문제삼게 되었던 것이다.⁷⁾

6) 『조선일보』 1927년 3월 31일, 조간 2면.

김기정의 문제 발언과 행동이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김원석(金元錫)이 징토문을 발표하면서이다. 당시 25세의 나이로 잡화상을 운영하고 있던 그는 1927년 3월 13일 통영면 부도정(敷島町)에서 도평의회원 김현국(金炫國)으로부터 김기정의 언행을 전해 듣고 「공분에 떠오르는 뜨거운 피를 참지 못」하고 「매죽 상습범」 김기정을 징토하는 뼈라를 만들어 돌리기로 결심했다. 김원석은 「통영 군민의 대표자인 도평의원」으로서의 김기정의 발언과 행동은 군민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널리 일반대중에게 알려 김기정을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⁸⁾

다음 날인 3월 14일 김원석은 통영 주민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동네 사람인 김상호(金尙昊) 집에서 자신이 직접 초안한 「매죽 상습범 김기정군을 징토하노라」라는 내용의 선전뼈라 500매를 인근 인쇄소에서 인쇄해서 통영면 내에 살포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김기정의 집에 가서 선전뼈라 1매를 보여주고 그를 문책했다. 그런데 김기정집에 우연히 와있던 역시 같은 동네 사람인 허기엽(許淇燁)이 김기정을 변호하자 분개한 김원석은 재떨이를 그의 왼팔에 던지고 얼굴을 때리며 왼쪽 허리를 걷어차 약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에 경찰은 즉시 인쇄소에서 징토문 원문을 압수하고 김원석을 체포하려 하였으나 그는 피신했다.⁹⁾

이상과 같이 김기정의 발언과 행동은 조선민족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일본인 중심의 정책을 펴는 일본제국주의의 지배정책에 대한 일방적 협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원석 등은 조선인의 관점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지배 상황은 인정하지만 조선인 본위의 정책을 실시하여 조선인의 이익과 권리를 증진할 것을 원했던 것이다. 즉, 그들은 도평의회원을 매개로 일본제국주의로 하여금 조선인의 입장에 선 정책을 실시하게 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김기정이 일본제국주의의 입장에서 발언하고 행동하자 그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경찰당국은 일방적인 협력자인 김기정을 보호하고 조선인의 더 많은 이익과 권리 증진을 꾀하는 조선인의 세력 확대를 막기 위해 김원석 등의 행동을 제지하려 한 것이다.

7) 위와 같음.

8) 「昭和二年 刑控公 第505號 判決(대구지방법복심법원, 1928년 5월 1일)」, 이하, 「第505號 判決」로 줄여 씀; 『조선일보』 1927년 3월 22일, 조간 2면. 한편, 당시 신문에는 김원석이 「모처」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판결문에는 김현국을 명시하고 있다. 판결문에 김현국의 직업에 관한 언급이 없으나 당시 민선 도평의회원과 동일 인물로 판단된다. 아마도 김원석은 당시 현직 의원에게서 전해들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확신하고 행동에 나섰을 것이다. 또한 판결문은 김기정이 위의 사실을 주장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원석이 김현국이 그렇게 주장한 것 같이 듣고 분개해 행동했다고 적고 있다. 이는 사법당국이 김기정을 보호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9) 『조선일보』 1927년 3월 22일, 조간 1면; 「第505號 判決」. 한편, 신문에는 14일로 보도된 데 대하여 판결문에는 15일로 적혀있으나, 여기서는 당시의 신문보도를 따름.

3. 김기정 징토 시민대회와 도당국의 탄압

1) 진상조사와 시민대회 개최

김원석이 작성해서 뿌린 징토문을 통하여 김기정의 문제 발언과 행동을 알게 된 청년 수십 명은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다」며 3월 17일 밤 김기정 징토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회를 조직했다. 그리고 조사위원으로 박중한(朴重漢), 박봉삼(朴奉杉), 최천(崔天), 김기영(金琪英), 박태근(朴泰根) 등 5명을 선정하고, 박중한과 박봉삼을 부산으로, 최천, 김기영, 박태근을 사천과 진주 등지로 각각 파견하여 진상조사에 착수했다.¹⁰⁾

사실 조사에 나선 5인의 진상조사위원은 부산에서 더욱 자세한 증거를 발견하자¹¹⁾ 3월 25일 통영에서 「조사위원보고회」를 열었다. 이 보고회에는 시민 6백여 명이 모였다. 그들은 조사위원들이 밝히는 김기정 발언의 「전후전말」을 듣고 「울분을 금치 못하여」 즉석에서 연이어 시민대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김기정을 징토할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¹²⁾

- 一, 김기정을 사회적으로 단교(斷交)할 것
(만일 단교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2김기정으로 인정할 것).
- 二, 김기정의 죄악을 전 조선민중에게 공포할 것.
- 三, 김기정의 죄악을 들어 징토연설회를 개최할 것.
- 四, 김기정이 가진 통영면협의회원, 보통학교학무위원 그 외 일반 공직을 사퇴할 것.
- 五, 김기정을 도평의원으로 선정한 것은 지방유권자의 망동(妄動)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시민대회는 전 민중 앞에 사과할 것.
(五, 위 결의를 즉시 인쇄해서 우선 통영 전시민에게 배포할 것.)¹³⁾

말하자면 김기정 징토 시민대회는 조선인의 이익을 무시하고 일본제국주의의 정책에 일방적으로 협력하는 김기정의 발언과 행동을 「죄악」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조선사회에 널리 알리고 그가 공직을 사퇴하게 함으로써 김기정을 징토하려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대회는 그들의 결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집

10) 『조선일보』 1927년 3월 31일, 조간 2면; 「第505號 判決」.

1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부산 도청에서 도평의회 회의록을 확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뒤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나중에 시민대회위원인 박봉삼, 박태근 등이 「부산 도청에서 도평의회 회의록을 다시 확인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12) 『조선일보』 1927년 3월 31일, 조간 2면; 「第505號 判決」.

13) 「第505號 判決」. 판결문에는 신문과는 달리 5번째 결의안이 명기되어 있고 이 결의안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을 적고 있어 결의안이 하나 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행위원을 선정했다. 먼저 시민대회 의장인 박봉삼이 집행위원을 선정할 전형위원으로 배홍엽(裴洪燁), 박태규(朴泰圭), 김계완(金桂完), 김상호(金相顯)를 지명하자, 전형위원들이 집행위원에 박봉삼, 박대근, 박중환, 박영근(朴英根), 최학기(崔學騏), 강희영(姜喜榮), 최남기(崔南棋)를 선정했다. 이어 3월 26일 집행위원들은 김기정 징토 시민대회의 결의 사항을 기재한 뼈라를 인쇄해서 김기정에게 송부했다. 그리고 4월 8일에는 김기정에게 일체의 공직을 사퇴하라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 같은 달 27일 오후 4시까지 태도를 결정해 회답하라고 통고했다.¹⁴⁾

그러나 김기정이 시민대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¹⁵⁾, 김기정 징토 시민대회는 3월 27일 「김기정 죄악 성토 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그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하지만 경찰당국은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려 연설회를 중지시켰다. 이에 김기정 징토 시민대회는 김기정의 죄악을 전 조선민족에게 알리려고 공포문을 인쇄하려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경찰 당국은 「출판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위협했다¹⁶⁾.

2) 시민대회에의 지지 확산

이와 같이 통영에서 김기정 징토 시민대회의 활동이 도당국의 탄압을 받아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그 사실이 신문보도 등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면서 각 지역에서 다양한 단체의 여러 형태의 지지와 연대가 잇달았다.

우선, 마산청년회는 3월 29일 긴급 위원회를 열고 조사위원으로 최철용(崔喆龍)을 파견하여 김기정의 발언과 행동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했다. 그리고 4월 4일 오후 8시부터 마산구락부회관에서 통영사건 조사보고회를 열고 수백여 군중이 모인 가운데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어 여해(呂海), 서재규(徐儼奎), 이태규(李泰奎)의 「피가 끓어오르는 감상담」이 이어졌다. 군중의 박수 규호(吶號, 큰 소리로 부르짖음)로 김기정에게 경고문을 발송할 것, 성토회를 열어 김기정을 사회적으로 매장할 것, 김기정의 죄악을 적발하여 민중에게 공포할 것 등을 결의하고 실행위원에 손문기(孫汶岐), 최철용, 여해, 김귀동(金貴東), 박제(朴濟) 등을 선거한 후 10시 반에 산회했다.¹⁷⁾

다음에, 경남 고성청년회도 김기정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위원으로 전갑봉(全甲奉), 구종근(具鍾根), 천일호(千一乎) 등 3명을 4월 5일 통영에 파견하여 현지 조사했다. 그 결과 고성청년회는 김기정의 발언과 행동이

14) 위와 같음.

15) 위와 같음.

16) 『조선일보』 1927년 3월 30일, 조간 2면; 『조선일보』 1927년 3월 31일, 조간 2면.

17) 『조선일보』 1927년 4월 9일, 조간 2면.

「백의족」을 모욕하고 조선인의 교육을 반대하는 망량(魍魎, 도깨비)이라 규정하고 그와 같은 「무리」가 대두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고성여자청년회, 고성기독교청년면려회 등과 연합하여 김기정 징토 연설회를 4월 6일 밤에 청년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수백여 명의 뼈라를 비롯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그러나 고성경찰서는 전갑봉을 불러 김기정이 도평의원으로서 회의석상에서 자기의 의견을 말한 것을 징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김기정과 관련된 일체의 행동을 엄금했다.¹⁸⁾

그리고 4월 4일 개최된 전북 고창 노동 친목회 임원회도 김기정 사건에 대하여 장시간 토의한 결과 그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에게 경고문을 발송하고 사회에 사죄가 없는 경우에는 성토 강연을 개최하기로 결의했다.¹⁹⁾ 4월 8일 전남 함평노동회관에서 열린 필시(必是)동맹 함평청년연합회 노동조합연합회 및 농민조합연합회의 긴급대표자회의도 김기정에 대하여 징토문을 발송하고 통영사회단체에 격려 전보를 칠 것을 결의했다.²⁰⁾ 이어 4월 9일에 열린 김천 금녕 청년회 집행위원회도 김기정에게 경고하고 우호 단체를 지원할 것을 결의했다.²¹⁾

또한 4월 10일 전북 옥구군 서수면 0[불명]산청년회 집행위원회도 김기정에게 경고문을 발송하고 사회에 사죄가 없는 경우에는 성토 연설을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²²⁾ 그리고 경남 거제도 각 사회단체(화요회 거제청년연맹, 거제신흥청년회 등 7개 청년단체)에서는 「매족범 김기정」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철저히 징토하기 위하여 통영시민대회에 4월 20일자로 연합격려문을 발송하였다.²³⁾ 4월 23일 경북 칠곡군 왜관청년회 집행위원회도 김기정의 「만행」을 규탄했다.²⁴⁾ 마지막으로 멀리 간도에서도 4월 25일 간도기자단 주최로 간도공회당에서 성토연설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일본영사관경찰서에 의해 돌연 금지되었다.²⁵⁾

3) 시민대회 보고 연설회

이와 같이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단체의 폭넓은 지지를 통해 자신감을 얻은 김기정 징토 시민대회 위원회는 4월 8일 지난 시민대회에서 결의된 여러 사항

18) 『조선일보』 1927년 4월 9일, 조간 2면.

19) 『조선일보』 1927년 4월 10일, 조간 1면.

20) 『동아일보』 1927년 4월 12일, 4면; 『조선일보』 1927년 4월 13일, 석간 1면.

21) 『조선일보』 1927년 4월 13일, 석간 1면.

22) 『조선일보』 1927년 4월 16일, 조간 1면.

23) 『조선일보』 1927년 4월 26일, 조간 1면.

24) 『조선일보』 1927년 4월 26일, 조간 1면.

25) 『조선일보』 1927년 5월 8일, 조간 1면.

들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우선 김기정 친척의 한 사람인 김한주(金漢柱)와 위원인 박태근, 박봉삼 외 수 명이 부산도청에서 평의회 회의록에서 김기정의 발언을 다시 확인하고 그것을 보고하기 위하여 시민대회보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경찰당국은 이 집회 역시 금지했다.²⁶⁾

그러나 김기정 징토 시민대회는 경찰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4월 17일 오후 2시부터 봉래각에서 「통영 김기정 최악 징토 시민대회 보고 연설회」를 강행했다. 연설회는 시민대회 의장인 박봉삼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시작 전부터 「인산인해의 군중」이 모여들어 장내는 물론 장외 정문 앞 광장까지도 입추의 여지가 없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장내외를 경계하는 다수의 정사복(正私服) 순사가 매우 긴장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순서에 따라 박봉삼이 대회 경과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자 임석한 경관이 해산을 명령했다. 이에 군중들이 「살기 등등」하게 연설회 진행을 부르짖자 경관이 마침내 해산을 취소했다. 이어서 집행위원 박중환이 등단하여 김기정의 경고문을 들고 장시간 「통절한 검토」를 하였으며 그의 「모족(侮族)적 최악」을 날날이 밝히자 군중들이 열광했다. 또한 진상조사위원 최천이 등단하여 「동포를 모욕한 김기정을 징토하자」는 제목으로 열변을 토하자 경관이 연설을 중지하고 그를 퇴단시켰다. 이어 의장 박봉삼이 조선 교육의 현상을 설명하고 김기정의 「모족적 폭언」을 규탄하자 「혈루(血淚)가 단에 떨어지고 폭우와 같은 박수와 규성(叩聲)은 지하에 묻힌 해골이라도 일어날」 정도로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이에 당황한 경관은 연설회 해산 명령을 내려 시민대회는 오후 5시에 폐회하였다.²⁷⁾

한편, 김기정은 사건이 점점 더 확대되고 일반의 항의가 더욱 거세어지자 변명서를 배포하여 자신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려 하였다. 그는 변명서에서 마산 고등보통학교와 부산여자고등보통학교를 반대한 일이 없으며 보통학교 설립에 반대한 대신 중학교 설립을 주장하였고 조선어 통역 철폐 문제는 회의록과 같다고 인정했다. 또한 조선인이 보통학교를 졸업하여 일정한 직업 없이 사회주의 등에 경사되어 민심악화를 가져온다는 주장과 3·1운동 이후 학교가 있어도 학생이 없다는 말은 잘못하였다며 「진사(陳謝)」했다. 그러나 조선인들은 진사라는 표현 때문에 문제된 그의 언행을 더욱 사실로 믿게 되고 그를 더욱 압박했다. 이에 김기정은 마침내 「최후의 결심」으로 시민대회 위원들을 명예훼손, 협박 등의 죄명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²⁸⁾

4월 19일 김기정 징토문을 산포한 김원석이 명예훼손과 출판법 위반으로 체포, 구금되었고 4월 27일에는 조사위원 박봉삼 외 3명이 명예훼손으로 경찰의

26) 『조선일보』 1927년 4월 14일, 조간 2면.

27) 『조선일보』 1927년 4월 21일, 석간 1면.

28) 「통영사건진상」 『동아일보』 1927년 5월 25일, 7면.

취조를 받았다.²⁹⁾ 이에 조선사회는 크게 분개하고 각 방면의 유지들은 김기정을 철저히 매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다.³⁰⁾ 여기에 더해서 경남도지사가 민선의원이었던 김기정을 관선으로 재선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더욱 분개한 김기정 죄악 징토 시민대회 위원회는 「너무나 조선민족을 모욕 무시함이 심하다」며 4월 27일 오후 4시부터 같은 위원회 사무실인 중외일보지국에서 회의를 열고 경상남도 당국을 규탄하는 연설회를 5월 5일 오후 2시 청년회관에서 개최할 것을 결의했다.³¹⁾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통영 전시에 광고까지 붙이고 만반의 준비를 다했다. 하지만 5월 3일 통영경찰서는 돌연 연설회를 금지했다.³²⁾

이러한 시민대회를 비롯한 조선인들의 움직임에 당황한 당국은 당황하여 취조를 마친 김원석을 5월 2일에 검사국으로 넘겼다.³³⁾ 또한 5월 9일 경찰은 시민대회에서 선정한 집행위원과 조사위원-박봉삼, 박중환, 박태근, 박영근, 박태규, 김상호, 최학기, 배홍엽, 김계완(金桂完), 최남기, 최천- 11명을 검거했다.

4. 시민들의 항의 시위와 실행 언도

1) 항위시위의 확산

김기정의 고소에 의해 시민대회 간부들이 대거 검거되었다는 소식에 크게 분노한 통영 시민들은 조직적으로 항위 시위를 전개하기 위해 5월 10일 「민정회(民正會)」라는 단체를 조직했다. 이어 5월 12일에 시민대회를 열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³⁴⁾ 그러나 경찰은 시민대회 개최를 금지했다. 이 때 경찰서에 구금된 사람들이 5월 11일부터 단식을 결행하고 그 중에는 생명이 위독한 중병환자가 있다는 사실이 민정회가 배포한 삐라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12일 오후 8시경에 그들의 친척과 시민 40여명 등 100여명의 주민이 항의 시위에 나섰다. 시위대는 관할 경찰서와 김기정 가택에 쇄도하여 경찰의 제지에도 움츠러들지 않았다. 이에 시위가 확산될 것을 두려워한 경찰은 인근 고성서(固城署)의 지원을 받으며 재향군인회 일본청년단까지 출동하여 엄중 경계했다. 그러나 시위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경찰서 부근의 교통

29) 『조선일보』 1927년 4월 26일, 조간 2면, 『조선일보』 1927년 4월 30일, 조간 2면.

30) 『조선일보』 1927년 4월 30일, 조간 2면.

31) 『조선일보』 1927년 5월 1일, 석간 1면.

32) 『조선일보』 1927년 5월 6일, 석간 2면.

33) 『조선일보』 1927년 5월 7일, 석간 2면.

34) 『동아일보』 1927년 5월 13일, 7면; 『통영사건진상』 『동아일보』 1927년 5월 25일, 7면.

이 차단되고 김기정이 피신하는 등 통영 전 시가가 완전 「전시상태」에 빠졌다.³⁵⁾

다음 날인 5월 13일 거리에서 밤을 새운 수백 명의 군중들로 아침부터 밤까지 경찰서 앞은 대 혼잡을 이루었고 밤이 되자 통영의 「남녀노소」가 거리로 뛰어나와 4-6천 명에 달했다. 단식동맹에 들어간 피고들의 가족을 선두로 경찰서에 모여든 시위대가 경찰에게 피고들의 면회를 요청하였으나 면회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극도로 흥분된」 군중들은 경찰서를 습격하여 돌을 던지며 피고들을 내어놓으라고 고함쳤다. 시위대는 다시 김기정의 집에 찾아가 그를 대면하고자 하였으나 역시 거부당하자 김기정의 담벽과 가옥의 일부 및 가구 등을 파괴했다. 이에 경찰은 「황황망조(惶惶罔措)」하여 무장경관을 출동시켜 군중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 또한 인근의 마산, 부산, 사천 등지로부터 급파된 수백 명의 경관이 총 끝에 창을 꽂아 들고 시가에 몰려다니는 등 실로 계엄상태를 이루었다. 그리고 소방부와 재향군인, 일본인 청년단까지 동원하여 군중에게 물을 쏘며 곤봉을 휘두르는 등 시위 해산에 안간힘을 썼다. 이 과정에서 통영경찰서장 다무라(田村) 서장이 입술이 깨어지고 앞니 두 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으며 조선인 순사도 3명이 중경상을 당하고 김기정의 아내는 놀라 졸도하여 김기정은 가족과 함께 변장 도주했다.³⁶⁾

이에 당황한 경찰은 더 이상의 시위 확대를 막기 위해서 주민들을 속속 검거하고 이미 검속되어 단식중이어서 정신까지 혼미해진 시민대회 간부 들을 5월 14일 오전 5시경에 경비선에 태워 서둘러 마산으로 압송했다.³⁷⁾ 또한 같은 날 대대적인 시위 주모자 검거에 들어가 민정회 간부를 포함한 십여 명을 소요죄라는 명목으로 검속하였다. 그리고 시민대회에 깊숙이 관여했던 『중외일보사』의 윤훈(尹薰)과 경남기자동맹특과원을 통영에서 퇴거시켰다.³⁸⁾ 이에 김기정도 더 이상 시민대회가 요구하는 공직 사퇴를 거부하지 못하고 군수에게 모든 공직 사면 청원서를 제출했다.³⁹⁾

2) 검거 확대와 실행 언도

35) 『조선일보』 1927년 5월 14일, 석간 2면; 『조선일보』 1927년 5월 15일, 석간 2면; 「통영사건진상」 『동아일보』 1927년 5월 25일, 7면.

36) 『조선일보』 1927년 5월 16일, 조간 2면; 「통영사건진상」 『동아일보』 1927년 5월 25일, 7면; 『중외일보』 1927년 5월 17일, 2면.

37) 『조선일보』 1927년 5월 15일, 석간 2면; 『조선일보』 1927년 5월 16일, 조간 2면.

38) 『조선일보』 1927년 5월 16일, 조간 2면.

39) 『중외일보』 1927년 5월 17일, 2면. 한편, 김기정은 5월 13일 시위가 일어난 지 제4일째인 17일에 측근들의 업호를 받으며 경찰의 충고를 받아들여 일본으로 떠났다(『조선일보』 1927년 5월 22일, 조간 2면).

통영 경찰서가 인근 경찰서 등의 지원을 받아 대규모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제1차 검거자를 마산에 압송한 후 추가로 민정회 간부를 검거하는 가운데 김기정이 공직을 사퇴함으로써 통영의 시위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이에 지원 병력이 돌아가자 다시 시위가 수면 위로 부상할 것을 염려한 통영 경찰서는 다시 시위 세력 검거에 나섰다. 5월 19일 오전까지 소요 선동 등을 이유로 서상환(徐相權), 김치경(金致敬)을 비롯하여 통영 유치원 보모 최봉선(崔鳳善)과 프로(無產)여성동맹의 주선이(朱仙伊), 정막래(丁莫來), 이화련(李華連) 등 여자 4명과 남자 39명을 검속하였다. 대대적인 검속에 통영 주민들은 마음대로 시가를 출입하지 못하고 특히 젊은 남자 중 평소 경찰의 호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타지방으로 몸을 피하였으며 신문기자 등 통신원의 입항까지도 절대 금지되어 통영의 시가는 쓸쓸하게 「사막」과 같이 변해갔다.⁴⁰⁾

검속된 4십여 명 중 22명이 5월 23일경에 검사국에 송치되자 사건이 예심에 회부되어 이들은 6월 4일 통영경비선으로 무장경관 10여명이 호송하는 가운데 마산형무소에 이감되었다.⁴¹⁾ 같은 해 10월 3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일반가족과 많은 방청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명예훼손, 출판법위반, 상해, 협박 등의 죄명으로 검거된 제1차시민대회 간부 12명에 대한 판결이 언도되었다. 징역 형량은 김원석과 박봉삼 각 징역 1년 3개월, 박태근, 박중환, 최학기 각 1년, 박영근, 강희영, 최남기, 배홍엽, 박태규, 김규환, 김상호 각 10개월이었다.⁴²⁾

이어 다음 달 11월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마산형무소에서 소요선동, 가택침입, 기구파상 등의 죄명과 상해 및 출판위반 등의 복잡한 죄명으로 6개월 이상의 「지리한 세월」을 보낸 21명의 제2차시민대회 간부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아침부터 물밀듯 밀려온 피고의 가족과 일반 방청객이 수백 명에 달하였고 피고의 수가 많고 법정이 좁은 관계로 방청권을 35매만 배부하여 법정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 경관의 비상한 경계 속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먼저 시위 선동 혐의를 받은 황윤덕과 황봉석은 민정회의 조직과 배후에 관해 심문을 받았는데 그들은 민정회를 조직한 것은 검속된 12명의 뒤를 이어 일을 계속하자는 것이었으며 배라를 배포한 것은 선동 목적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거의 다 부인하였다. 다음에 주경문(朱敬文), 서상환, 박중환(朴鍾漢), 신전희(申全熙), 이태원(李泰源), 김동근(金同根) 등은 시위 주도 사실을 부인하고 통영경찰서 황경부(黃警部)와 피고들과의 사이가 좋지 못한 관계로 모함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김상훈(金相燾)은 그냥 상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기정의 집을 지나갔을뿐이라 하였으며, 김영중(金永仲)은 당시 기

40) 『조선일보』 1927년 5월 22일, 조간 2면.

41) 『조선일보』 1927년 6월 9일, 조간 2면.

42) 『조선일보』 1927년 10월 5일, 석간 2면.

자로서 사실을 조사하러 다닌 것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염원모(廉元模), 배봉지(裴奉誌) 등도 모두 사실을 절대 부인했으며, 어린 소년 양재세(梁在歲)는 이 발소의 일을 하고 열두시가 넘어 김기정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순사에게 구타 당해 욕을 하며 항의하다가 구속되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봉선, 주선이, 강명순(姜明順) 등 여성들도 대개 그 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이 중 최봉선은 마산 사람으로 히로시마(廣島) 여학교의 4학년에 재학 중인데 며칠 전에 형을 찾아 보려고 통영에 왔다가 뜻밖에 구속되었다고 주장했다.⁴³⁾

12월 7일 이들에 대한 판결 언도가 내려졌다. 아침부터 몰려드는 방청객과 멀리 통영에서 온 가족들이 법정 뜰을 가득히 메웠다. 예정보다 5시간이나 늦은 오후 2시 5분에야 겨우 법정문을 열게 되자 엄중한 경관의 제지를 받아가면서도 밀려드는 방청객 때문에 한 동안 소동이 있던 후에야 재판장의 판결 언도가 내려졌다. 황덕운과 황봉석 각 징역 1년 6개월, 김동근 징역 1년 4개월, 주경문, 이태원, 김상훈, 김영중 각 징역 1년, 서상환, 염원모, 김위조(金渭祚), 박한중 각 징역 6개월(2년간 집행유예), 문복만(文福萬) 징역 4개월(2년간 집행유예), 신전희(申全熙) 벌금 30원, 배봉지 벌금 20원, 최봉선, 박갑이 무죄, 김작불(金作不), 김근조(金根祚), 양재세, 주선이, 강명순(姜明順) 각 징역 3개월(2년간 집행유예)이었다.⁴⁴⁾

한편, 제1차시민대회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불복하고 대구복심법원에 공소했다. 1928년 4월 10일에 첫 공판이 열렸는데, 보석중인 박중환, 최남기, 박대근, 박태규, 배홍엽, 김상호 등 6명을 제외한 피고들은 거의 1년간이나 옥중에서 고초를 겪어 「창백한 안색과 파리한 형용」으로 출정했다. 방청객이 입주의 여지없이 법정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들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으나 징토문 인쇄는 비밀리에 한 것이 아니라 경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⁴⁵⁾ 5월 1일 오후 1시에 판결이 언도되었는데, 김원석은 8개월에 벌금 30원, 박봉삼, 박중환, 최학기는 각 징역 6개월, 박영근, 강희영, 최남기, 배홍엽, 박태규, 김규환, 김상호 각 징역 4개월에, 김원석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행유예 3년에 처해졌다.⁴⁶⁾ 1심보다 형량이 대폭 줄어든 것은 이미 1년 이상 수형했고 시민대회 활동이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민심을 감안한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날 김기정은 시민대회가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소를 취하였다.⁴⁷⁾

43) 『조선일보』 1927년 11월 24일, 석간 2면; 『조선일보』 1927년 11월 25일, 석간 2면.

44) 『조선일보』 1927년 12월 9일, 석간 2면.

45) 『조선일보』 1928년 4월 12일, 석간 2면.

46) 『조선일보』 1928년 5월 4일, 석간 5면; 「第505號 判決」.

47) 「第505號 判決」.

이어 약 6개월 후인 12월 13일에 제2차시민대회 관련자들에 대한 복심법원의 판결 언도가 있었다. 황덕윤 등 14명에 대해 소요, 출판법 위반, 건물파괴 상해 혐의로 황덕윤과 황봉석 각 징역 1년 6개월, 김영중 8개월, 염원모, 김위조(金渭祚) 각 징역 6개월, 서상환, 박중환 각 징역 6개월(2년간 집행유예), 김동근 징역 1년, 신전희(申全熙), 배봉철(裴奉喆), 김조민(金祚稷), 박갑이, 김근조 각 3개월(2년간 집행유예), 최봉길 징역 6개월(2년간 집행유예)이 언도되었다⁴⁸⁾.

한편, 김기정 징토 시민대회와 관련되어 실형을 언도받은 28명의 연령과 직업은 아래와 같다. 연령은 20대가 11명, 30대가 12명, 40대가 3명, 50대가 2명으로 2, 30대가 압도적이며 직업은 상업관련자가 16명으로 가장 많다.

[표1] 김기정 징토 시민대회 관련 구속자의 신상명세

성명	연령	직업	성명	연령	직업
김원석	25	잡회사	박봉삼	53	기독교전도인
박봉근	26	칠기상	박중환	30	기독교회서기
박영근	33	양복상	최학기	29	나전세공상
강희영	34	해산물상	최남근	38	잡회사
배홍엽	28	석탄상	박봉규	31	지물(指物)상
김계완	31	중외일보기자	황덕윤	29	해산물상
주경문	30	이발업	황봉석	30	상업
서상환	41	농업	박진환	42	소주제조업
신전희	57	유생	이태원	31	자전차상
김상훈	31	양복맞춤직	김영중	41	신문기자
김동근	29	어업	염원모	29	어업
배봉지	34	지물세공업	김위조	37	날품팔이
김작불	26	날품팔이	박갑이	28	소고기판매업
김근조	26	농업	최봉선	22	학생

출처: 「昭和二年刑控公第505號判決(대구지방법복심법원, 1928년 5월 1일)」;

「昭和二年刑控公第646號判決(대구지방법복심법원, 1928년 12월 13일)」

5.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927년 경남 통영에서 전개된 김기정 징토 시민 대회는 당시 도평의원원이었던 김기정이 조선인의 민족적 입장을 무시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자 일반 조선인들이 그를 징토하기 위해 공직 사퇴 등을 요구하며 벌인 항의 시위였다. 김기정이 시민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시민대회의 세력

48) 『조선일보』 1928년 12월 17일, 석간 3면.

이 확대될 것을 두려워한 당국이 김기정을 옹호하며 시민대회의 활동을 탄압하자 그에 반발하여 대규모 시위로 발전하였다. 이에 당국은 더 이상의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대회 간부들을 구속하고 김기정의 공직사퇴를 수리하며 구속자에게 실형을 언도함으로써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김기정 징토 시민대회의 일련의 과정은 도지사의 자문기관인 도평의회에 참여한 조선인 의원이 일방적으로 협력할 수 없었음을 잘 보여준다. 즉 일본제국주의 지배하 식민지 조선에서 실제 행해진 도평의회의 정치적 전개는 도평의회원이 지배당국과 조선사회를 사이에 두고 매개적인 위치에서 이루어졌다. 도평의회원은 지역 주민의 지지를 획득하여 더 많은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배 권력과의 갈등과 대립도 감행해야 했다. 또한 지배당국의 신용을 바탕으로 조선인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들과의 협력과 협조도 필요했던 것이다.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영구히 지속하려는 일본제국주의를 상대로 특히 저항의식이 강한 조선인 사회에서 펼쳐진 조선인 도평의회원의 출타기는 결코 쉽지 않은 곡예였다.

한편, 본고는 김기정 징토 시민대회라는 한 사건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식민지 시기에 전개된 도평의회의 역사적 성격의 일단을 밝힌 데에 불과하다. 앞으로 도평의회에서 실제 벌어진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실증연구가 진행되어야만 전체 도평의회의 역사적 성격을 올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일본제국주의 지배하 식민지 조선에서 실제 전개된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삶의 모습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参考文献】

-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외일보』
「昭和二年 刑控公 第505號 判決(대구지방복심법원, 1928년 5월 1일)」
「昭和二年刑控公第646號判決(대구지방복심법원, 1928년 12월 13일)」
「改正地方制度條文」(『朝鮮』, 1921年 9月號 附錄 수록).
姜東鎭(1980)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김동명(2000) 「일본제국주의와 식민지 조선의 지방 『자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2
집 1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동선희(2005) 「일제하 조선인 도평의회·도회의원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찬승(1991) 「일제하 ‘지방자치제도’의 실상」 『역사비평』, 통권 15호, 역사비평사.
孫禎陸(1992) 『韓國地方制度·自治史研究(上)』, 一志社.
지수걸(1996) 「일제하 공주지역 유지집단의 도청이전 반대운동(1930.11~1932.10)」, 『역
사와 현실』, 제20권, 한국역사연구회.
_____ (2007) 「일제하의 지방통치시스템과 군 단위 ‘관료-유지체제」, 『역사와 현실』,
제63권, 한국역사연구회.
並木眞人(1992) 「植民地期朝鮮人の政治參加 -解放後史との關聯において」 『朝鮮史研究會論
文集』, 第31集, 東京, 綠蔭書房.
Robinson, Ronald(1972), “Non-European Foundations of European Imperialism: Sketch
for a Theory of Collaborations”, R. Owen and B. Sutcliffe, eds., Studies
in the Theory of Imperialism. London: Longman, 1972.

要 旨

本研究の目的は、1927年慶尙南道統營で起きた「金淇正懲討市民大會」を中心に日本帝國主義の支配下植民地朝鮮において展開された道評議會の歴史的 성격の一端を明らかにすることにある。金淇正懲討市民大會は、当時道評議員であった金淇正が朝鮮人の民族的立場を無視する發言と行動をすると、一般朝鮮人たちが彼を懲討するために公職辭退などを求めて行った抗議示威である。金淇正が市民たちの要求を拒否し、市民大會の勢力が擴大することを恐れた当局が金淇正を擁護し市民大會の活動を彈壓すると、それに反發して大規模の示威に發展した。これに当局は更なる示威の擴散を防ぐために市民大會の幹部らを拘束し金淇正の公職辭退を受理し、拘束者に實刑を言い渡すことにより事件は片付けられた。

このような金淇正懲討市民大會の一連の過程は、道知事の諮問機關である道評議會に参加した朝鮮人議員が一方的に協力す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ことをよく示している。すなわち、日本帝國主義の支配下植民地朝鮮での道評議會の政治的展開は、道評議員が支配当局と朝鮮社會を間におき媒介的位置において行われた。道評議員は地域住民の支持を得てより多くの政治的影響力を確保するために支配權力との葛藤と對立も敢行しなければならなかつた。また、支配当局との信用をもとに朝鮮人の要求を貫徹させるために彼らとの協力と協調も必要であつた。朝鮮に對する植民地支配を永久に續こうとする日本帝國主義を相手に、特に抵抗意識の強い朝鮮社會において行われた朝鮮人道評議員の綱渡りは決して易しい曲芸ではなかつた。

キーワード：日本帝國主義、植民地朝鮮，慶尙南道道評議會、金淇正，市民大會，
金淇正懲討市民大會

투 고 : 2011. 5. 31
1차 심사 : 2011. 6. 11
2차 심사 : 2011. 6. 25